

홍보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총장이 교직원 중에서 소관부서장의 제청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한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단기 홍보계획의 수립
2. 교내외 홍보업무
3. 대학 홍보정책 및 홍보방향
4. 홍보용 간행물의 기획 제작
5. 기타 본 대학교의 홍보활동에 관하여 대외협력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의결이 필요한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간사가 관리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홍보실 홍보담당자로 한다.

제8조(사무의 주관) 위원회의 사무는 홍보실에서 주관한다.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